

결 정

2018 - 4036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

1. 스포츠조선 발행인 방 성 훈
2. 일간스포츠 발행인 홍 성 완

주 문

스포츠조선(sports.chosun.com) 2018년 2월 3일자(이하 캡처시각) 「女승무원, 기내에서 회장 XX해 67억벌어?! “충격”」 제목의 광고, 일간스포츠(isplus.live.joins.com) 2월 19일자 「女승무원 6억받고 밤마다 XX해 ..충격」 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‘주의’ 조치한다.

이 유

①스포츠조선



<18. 2. 3. 10:59 캡처>

<<http://sports.chosun.com/news/ntype5.htm?id=201802040100023390001344&ServiceDate=20180203>>

②일간스포츠



<18. 2. 19. 01:21 캡처>

<http://isplus.live.joins.com/news/article/article.asp?total_id=22376109>

스포츠조선, 일간스포츠는 주식투자정보제공업체 ‘갤럭시투자그룹’ ‘프리미엄경제연구소’를 광고하면서 「女승무원 6억받고 밤마다 XX해 ..충격」 「女승무원, 기내에서 회장 XX해 67억벌어?! “충격”」이라고 선정적인 문구와 사진을 사용해 제목을 달았다. 그러나 이 문구를 클릭해 들어가면 주식투자 정보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어디에도 여승무원 이야기는 없다.

이러한 광고는 건전한 미풍양속을 해치고 청소년층의 정서를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2,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(2)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※참고

1)스포츠조선

<<http://buxmeto.co.kr/ginvest/?ref=2117&cc=1162651>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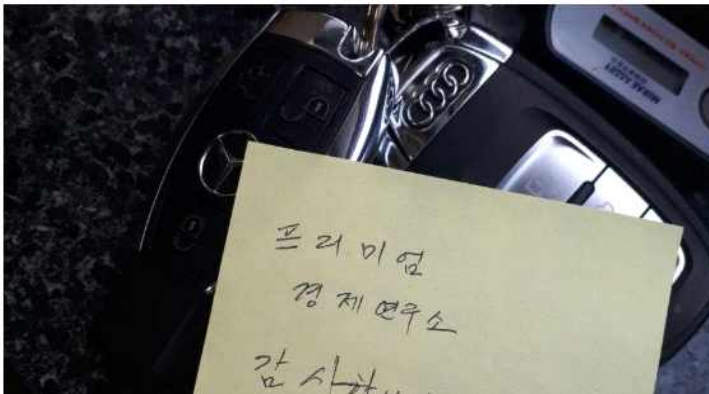
2)일간스포츠

<<http://buxmeto.co.kr/preco/m3/?ref=1202&cc=1152916>>

[화제] 주식 '규칙'만 알면 "月 3000만원" 벌 수 있다? 비결 공개..화제!

최종등록 - 2018-02-18 09:13

최근 한 커뮤니티 사이트의 여성회원의 3천만원대 수입 인증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. 익명을 요청한 주인공(이하 A씨)은 불과 1년 전만 해도 얼마 안 되는 월급을 받자마자 학자금대출과 월세, 통신비 등을 내고 나면 식비와 교통비만 간신히 해결하던 사회 초년생이었다. 그런 A씨가 역대 자산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?



2018년 3월 14일

한국신문윤리위원회

위원장	김용담	기용대
위원	정승호	정승호
	장명국	장명국
	박재현	박재현
	장인철	장인철
	김규식	김규식
	강희	강희
	하윤수	하윤수
	김영모	김영모

박 미 경 *12/26*

○ 적용 조항

신문광고윤리강령 2 신문광고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 된다.

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(2) 혐오감이나 어떤 욕정을 불러 일으키는 음란, 추악, 또는 잔인한 내용